

경운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송선학원 정관」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7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동문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하 “교원 평의원”이라 한다) : 5명
2. 직원(이하 “직원 평의원”이라 한다) : 5명
3. 학생(이하 “학생 평의원”이라 한다) : 1명
4. 동문(이하 “동문 평의원”이라 한다) : 1명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하 “외부 평의원”이라 한다) : 1명

②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위원 수는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별표 1]에 의거하여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평의원은 본교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원

2. 직원 평의원은 본교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
 3. 학생 평의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동문 평의원은 본교의 졸업생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총장이 추천한 자
- ④ 현재 교무위원인 자는 교원 평의원이 될 수 없다.
- ⑤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 평의원 및 직원 평의원 : 휴직, 퇴직,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2. 학생 평의원 : 휴학, 수료, 졸업, 교환학생 파견,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동문 평의원 및 외부 평의원 :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자격 또는 직위 상실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평의원이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⑦ 평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즉시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선임기준 및 방법) ① 평의원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의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로 [별표 2]에 의거하여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및 직원 평의원 : 대학 정책, 행정, 경영 분야의 업무 경력이 우수한 자로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생 평의원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내 프로그램 참여 등 대학생활에 충실한 자로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동문 및 외부 평의원 : 대학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평의원 : 단과대학별로 직접선거를 통해 평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 선거는 직접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단과대학별 평의원 후보자 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직원 평의원 : 부서에서 추천한 평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 선거는 직접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생 평의원 : 대의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총학생회가 추천한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
 4. 동문 평의원 : 총동창회가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5. 외부 평의원 : 외부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평의원의 선출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선임시기) ① 임기만료로 인한 평의원 선임의 경우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 평의원을 선임한다.

② 평의원이 임기 중에 사임할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후임 평의원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7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새로 선임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해임 및 사임) ① 평의원은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서를 제출한 날 또는 제3조에서 정한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에 해임된다.

② 평의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회의) ① 평의원회는 총장, 의장 또는 재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법인의 개방 임원 추천 요청 시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목적, 회의일시, 회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1조(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내용 및 결정사항
3. 참석자 성명
4. 표결수
5. 그 밖에 평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개최 후,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

3. 당해 평의회에서 비공개 정보로 인정되어 의결한 사항

제12조(비밀유지)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학교법인 「송선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란 한다) 제31조의7에 따라 평의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의회는 법인의 개방임원 추천 요청에 따라 「정관」 제31조의7 제2항에 명시된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정원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조(간사) ① 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의 제정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5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지원처에서 관장한다.

제16조(예산) 총장은 평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7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평의회는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은 당초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정관내 대학평의원 정수변경에 따라 시행한다.(2018.01.16.)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추가로 선임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당초 평의원의 잔여 임기 (2018.11.07.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평의원 자격 요건(제3조 제3항 관련)

구성단위	자격 요건
공 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교원 평의원	- 재직기간 3년 이상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교무위원이 아닌 자 - 휴직, 퇴직, 징계처분에 있지 않은 자
직원 평의원	- 재직기간 3년 이상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 - 휴직, 퇴직, 징계처분에 있지 않은 자
동문 평의원	- 본교를 졸업한 졸업생
외부 평의원	-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자
학생 평의원	-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별표 2】

대학평의원 선임 기준(제4조 제1항 관련)

구성단위	선임 기준
교원 평의원	- 대학 정책 분야, 행정 분야, 경영 분야 등의 업무 경력 또는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한 자로 교원 평의원으로서 대학평의원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원 평의원	- 대학 정책 분야, 행정 분야, 경영 분야 등의 업무 경력 또는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한 자로 직원 평의원으로서 대학평의원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동문 평의원	- 대학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동문 평의원으로서 대학평의원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부 평의원	- 대학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외부 평의원으로서 대학평의원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생 평의원	- 대학생활과 교우관계가 원만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내 프로그램 참여 등 학습활동에 적극적인 자로 학생평의원으로서 대학평의원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